

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4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4. 17) 상정
- 제12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6. 4. 17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강 성 모)

가. 제안이유

-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2006. 1. 11, 법률 제7846호)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함.
(안 제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주민연서 수를 총 주민 수 대비 100분의 1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?	○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있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고, 동 조례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496호
의결 년월일	2006. 4. 19. (제126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4. 5.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2006. 1. 11, 법률 제7846호)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함. (안 제2조)

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서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